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92
------	------

2023. 12. 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0월 11일, 유정희 의원(찬성자 17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12.19.)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유정희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2016년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외에도 서울공예박물관을 비롯한 다양한 박물관을 건립 중에 있어 이들 박물관의 자료수집 및 관리 방안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역사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함과 동시에 동 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
- 그러나 동 조례는 건립 추진 중인 박물관의 전시자료 수집 근거와 전시

자료 수집을 위한 예산집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박물관 자료 수집에 있어 필요한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음. 이에 자료 구입 및 기증자료 수증에 있어 필요한 제한사항을 명시해 유물 등 소장품 확보에 있어 가치 있는 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박물관 자료 구입의 제한 사항에 대해 신설함(안 제3조의2).

나. 박물관 기증 자료 수증의 제한 사항에 대해 신설함(안 제4조의2).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서울역사박물관 등 박물관의 자료 구입 및 기증자료 수증·기탁에 있어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불분명 등의 경우 제한사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음.
- 최근 들어 다양한 컴퓨팅 기술로 인해 불법 복제품 등으로 박물관 자료에 대한 위작 논란이 대두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국·공립박물관의 박물관 자료 구입과 수증 등의 제도 변화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2019년 6월 강화군 역사박물관이 유물 구입에 있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개인 소장품을 대거 사들이면서 강화도와 관련 없는 다른 지역 유물까지도 구매하여 논란이 된 바 있으며, 2018년 12월 국립중앙박물관도 박물관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현대미술작품을 구매하여 논란이 된 바 있음.

나.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자료 구입의 제한(안 제3조의2)

- 개정안은 박물관들이 자료를 구입할 경우 소장경위나 출처,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 행위, 소유권 등에 논란이 있는 경우 자료 구입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신설>	<u>제3조의2(자료 구입의 제한) 시장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를 구입할 수 없다.</u> <u>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u> <u>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u> <u>3.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문화재이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될 경우</u>

- 이는 박물관 자료의 소장경위 및 출처가 명확하고, 중대한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가 입증된 자료에 한해서 구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 아울러, 구입한 박물관 자료가 불분명한 기록으로 인해 가품 논란 등 법적인 분쟁 또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수단이며, 시립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위상에 손상을 가할 수 있으므로 박물관 자료 구입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음.

- 중앙정부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규정을 살펴 보더라도 동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

< 국립중앙박물관 등 박물관 자료 구입 규정 비교 >

구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규정명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
내용	제6조(구입 제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입할 수 없다. 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 3.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문화재이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될 경우	제7조(구입제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입할 수 없다. 1. 소장경위,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유 관계가 분명하지 않을 때 2. 도난,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거나 관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박물관에서 필요하지 않거나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제5조(매도신청 제한)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매도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도굴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도굴 전과사실이 있는 자로서 유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4.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유물이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되는 경우 5. 박물관에서 필요하지 않은 유물이거나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자료 기증의 제한(안 제4조의2)

- 개정안은 자료 기증이나 기탁받을 자료가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에 논란이 있거나 문화재적 가치가 낮고 필요치 않은 문화재라고 판단될 경우 기증·기탁에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자료 기증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증 자료를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박물관에 필요치 않은 문화재 또는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서울역사박물관의 경우 자료·유물 등을 직접 구입 이외에 기증과 수탁을 통해서도 소장품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수증 유물은 4,660건으로 최근 3년간 구입 유물 433건 대비 1,076.2%나 높은 수치로서 박물관 자료 확보에 있어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4개 시립박물관(분관 및 건립 중인 시설 제외)은 서로가 다른 설립목적과 목표에 따라 운영되는바, 고유한 설립목적과 목표에 부합되도록 박물관 자료를 기증받아야 할 것임.
- 2018년 12월 국립중앙박물관이 현대미술품인 금속공예품 4점을 구매하면서 박물관의 목표(고고학·역사학·미술사 연구 및 전시)와 부합하지 않은 유물 수집이라는 논란이 있었음.
- 따라서 동 개정안을 통해 시립박물관에 필요한 자료만을 수증하게 된다면 한정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유물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9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정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292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10월 11일

발 의 자: 유정희 의원(1명)

찬 성 자: 김성준, 김인제, 박강산,
박유진, 봉양순, 송도호,
송재혁, 아이수루, 우형찬,
, 이병도, 이상훈, 이영실,
이용균, 임종국, 전병주,
정준호, 최재란 의원(17
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2016년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외에도 서울공예박물관을 비롯한 다양한 박물관을 건립 중에 있어 이들 박물관의 자료수집 및 관리방안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역사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함과 동시에 동 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
- 그러나 동 조례는 건립 추진 중인 박물관의 전시자료 수집 근거와 전시자료 수집을 위한 예산집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박물관 자료 수집에 있어 필요한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음. 이에 자료 구입 및 기증자료 수증에 있어 필요한 제한사항을 명시해 유물 등 소장품 확보에 있어 가치 있는 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박물관 자료 구입의 제한 사항에 대해 신설함(안 제3조의2).
- 나. 박물관 기증 자료 수증의 제한 사항에 대해 신설함(안 제4조의2).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재보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첨부)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자료 구입의 제한) 시장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를 구입할 수 없다.

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
3.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문화재이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될 경우

제4조의2(자료 기증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증 자료를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박물관에 필요치 않은 문화재 또는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기탁받은 자료가 제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수탁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조의2(자료 구입의 제한) 시장 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 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를 구입 할 수 없다. 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 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 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 우 3.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 은 문화재이거나 공동 소유물 로 판단될 경우
<u><신 설></u>		제4조의2(자료 기증의 제한) 시장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가 있을 때에는 기증 자료를 수 증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 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박물관에 필요치 않은 문화 재 또는 문화재적 가치가 없 다고 판단될 경우

제5조(자료의 기탁 등) ①·② (생략) <u><신 설></u>	제5조(자료의 기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시장은 기탁받을 자료가 제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수탁하지 않을 수 있다.</u>
--	--

문 서 번 호

2023101000000002

비 대 상 사 유 서

요 청 인 : 유정희 의원

담 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손제승 주무관

접 수 일 : 2023.10.10.

회 신 일 : 2023.10.11.

내용문의 : 02-2180-7954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목 차

1. 판단 근거
2.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의2(자료 구입의 제한), 제4조의2(자료 기증의 제한)를 신설하여 자료 구입 및 기증의 제한과 제5조(자료의 기탁 등)제3항 기탁받을 자료의 수탁 예외를 규정한 개정안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손제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